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Chubb 레저상해보험 B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 1)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① 대상자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 ② 판매금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합니다.
- 2)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레저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특정 여가활동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골프, 자전거, 스키, 캠핑 등 레저활동중의 상해 및 레저활동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등을 선택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 3)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최대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 분	담 보	내 용
기본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약관에 정한 특정여가활동중에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특 약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약관에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특정전염병치료비	보험기간중에 약관에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임상학적 진단을 포함)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 한도)	보험기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단, 120일 한도)
	환경성질환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 한도)	보험기간중에 약관에 정한 환경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단, 120일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화상진단비 (동일사고당 1회한)	피보험자가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화상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피보험자가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깁스치료비 (동일사고당 또는 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단,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지급

구 분	담 보	내 용								
특 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약관에 정한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 정한 교통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지급 <table><tr><th>지 급 사 유</th><th>소 득 보 상 금</th></tr><tr><td>100% 후유장해</td><td>보험가입금액의 100%</td></tr><tr><td>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td><td>보험가입금액의 70%</td></tr><tr><td>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td><td>보험가입금액의 35%</td></tr></table>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70%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35%
	지 급 사 유	소 득 보 상 금								
	100%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70%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35%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부속시설 포함)구 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골프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부속시설 포함)구 내에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홀인원비용(실손) (연간 1회한)	18홀 이상 보유한 국내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단, 깔대기 홀 제외)을 행한 경우,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등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약관에 정한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자전거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5만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스키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스키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5만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마라톤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마라톤대회 참가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마라톤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마라톤대회 참가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 지급									

※ “특정여가활동중” 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함)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
 -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함).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및 “대중교통수단”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란 아래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 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교통사고” 및 “교통수단”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3. 도로 통행중에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한 교통사고

※ “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 ~ 100%)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입원일당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4)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특정전염병치료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김스치료비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5) 배상책임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6) 홀인원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의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및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하역작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동일

(4)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함)

(5) 배상책임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및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에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상해급수1급, 40세 남자, 일시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선택계약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2만원
	환경성질환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2만원
보험료		6,630원

* 직무 및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5.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가 자살, 자해 등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Q)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로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하며,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예) 정액보상담보 : 사망, 후유장애 등

실손보상담보 : 배상책임, 홀인원비용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